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알림톡 문자서비스(Lenovo SR650, KUM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89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샘터정보기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공통기반 스토리지(Hitachi VSP G600,G2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5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샘터정보기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온나라2.0 HW 일체(AIS서버, Hitachi 스토리지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샘터정보기술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통합로그관리시스템(서버, 로그 인사이트 v2.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05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샘터정보기술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청도군 대표 홈페이지 및 솔루션 관련 일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3,37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YH데이타베이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토지정보시스템 스토리지(Pure Storage)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72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애니아이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망연계 보안 솔루션(ssbridge v3.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4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애니아이티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품목 : 토지정보시스템 오라클 RDBMS 12c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청도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12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청도군 (인)

제조사·공급사명 ㈜애니아이티 (인)